

일시 : 2022. 1. 24.(월)

장소 : 카카오톡 비대면 회의

- 검단동 통장 정기회의 -
1월 중 홍보자료

즐거워
행복한
함께하는
서구



검 단 동

목 차

1. 2022년 설 연휴기간 생활쓰레기 수거일정 안내	3
2. 인천 서구 출산장려 지원사업 안내	4
3. 2022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등 신청안내	5
4. 개정 동물보호법 시행 알림	6

2022년 설 연휴기간 생활쓰레기 수거일정 안내

우리 구의 설 연휴기간 동안 생활쓰레기 수거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설연휴기간: 2022. 1. 29.(토) ~ 2. 2.(수) / 5일간

□ 생활쓰레기(일반, 재활용, 음식물) 수거일정

담당지역		근무현황					비고
		1.29.(토)	1.30.(일)	1.31.(월)	2.1.(화)	2.2.(수)	
경서동, 연희동(연희,공촌,심곡동)	생활	○	휴무	수거	휴무	휴무	태성
	재활용 음식물	×					
신현원창동,석남2동,가좌1동	수거	휴무	휴무	생활	○	휴무	태성
	재활용 음식물			재활용 음식물	×		
검암동(검암,백석,시천동)	수거	휴무	휴무	수거	휴무	생활 음식물	경인
	재활용 음식물					○	
가좌2동, 가좌3동, 가좌4동	생활	○	휴무	수거	휴무	생활 음식물	경인
	재활용 음식물	×				○	
석남1동 (168~192,194~206,213~224 444~455,477~479, 511~526),가정1동	생활	○	휴무	수거	휴무	재활용	삼우
	재활용 음식물	×				×	
석남1동 (456-467,480-484,495-510) 가정2동,가정3동,석남3동	수거	휴무	휴무	생활	○	휴무	삼우
	재활용 음식물			재활용 음식물	×		
검단동,블로대곡동,원당동 당하동,오류왕길동,마전동	수거	휴무	휴무	수거	휴무	수거	검단
아라동(검단신도시)	수거	휴무	휴무	수거	휴무	휴무	이도
청라1·2·3동	클린넷	수거	수거	수거	휴무	수거	브니엘
	재활용 (상가주택)	휴무	휴무	수거	휴무	휴무	태성

* 생활쓰레기는 수거일 전날(20:00~24:00)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 연휴기간 중 일반 및 음식물쓰레기 배출 자제를 협조 부탁드립니다.

【 부서명 : 자원순환과 ☎ 560 - 4390 】

인천 서구 출산장려 지원사업 안내

□ 서구 출산장려 사업 안내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기간	신청방법
첫만남 이용권	-22.1.1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된 영유아	-출생아당 200만원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지원)	-신청기간은 별도로 없으나 사용기간이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사용종료일 전 여유있게 신청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 정부24 온라인 신청
서구 출산 지원금	-22.1.1이후 출생·입양아로 주민등록을 서구에 하고 출생·입양일 기준 1년 이전부터 계속해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	-첫째아 30만원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150만원 -넷째아 이상 250만원		
저소득 복지대상자 출산축하용품 품비	-19.7.1.이후 출생아로 주민등록을 서구에 하고 출생일 기준 1년 이전부터 계속해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 -출산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수급자, 같은 법 제2조 제10호 및 각 개별법에 의한 차상위계층	-출산축하용품비 30만원 (서구지역화폐 서로e음)	-출생신고 후 60일 이내 신청 ※서구 거주기간 1년 미만인 경우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19.7.1.이후 육아휴직자부터 적용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서구에 주민등록이 된 경우	-월 50만원씩 최소 1개월에서 최대 3개월간 지원 ※지급대상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월 휴직일수만큼 일할 계산 지급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통지서(고용센터발행) 필히 지참

※ 참고사항 : 관련 포스터 첨부(pdf 파일로 별도 송부)

【 부서명 : 가정교육과 ☎ 560 - 5738 】

2022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등 신청안내

□ 사업개요

- 지원대상: 관내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단지
 -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사용검사일 기준 10년 이상 경과 된 단지
(2011년 12월 말 이전 준공건축물)
 - 노후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 사용검사일 기준 20년 이상 경과 된 단지
(2001년 12월 말 이전 준공건축물)
 - ※ 2021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시행 단지 우선 검토
 - ※ 관리업무 종사자 합법적(건축물대장 상 등재) 휴게시설 개선사업 우선 검토
 -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사용검사일 기준 20년 이상 경과 된 단지
(2001년 12월 말 이전 준공건축물)
- 사업내용: 공동주택 공용부분에 대한 보수 등
 - 단지 내 도로 및 부속시설 관리, 유지보수
 - 어린이놀이시설, 경로당, 보수, 상·하수도 시설관리 등
 - 범죄예방을 위한 방범용 CCTV, 무인택배함 설치
 - 경비원 및 미화원 등 관리업무 휴게시설 설치 및 보수 등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2. 1. 24.(월) ~ 3. 4.(금)
- 신청자: 공동주택 단지 입주자대표회장 또는 입주자대표
- 신청방법
 - ① 작성: 서식받기(택일)
 - 서구청 홈페이지(소통 → 서구소식 → 새소식 → 검색창“지원사업”)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② 제출: 서구청 주택과(본관 3층) 주택관리팀에 제출

※ 사업안내: 서구청 주택과 주택관리팀(☎ 032-560-3002, 3003)

【 부서명 : 주택과 ☎ 560 - 3002 】

개정 동물보호법 시행 알림

☐ 동물보호법 개정사항

구 분	현 행	개 정
동물등록방식 축소	• 동물등록방식 - 내·외장 무선식별장치, <u>인식표</u>	• 동물등록방식 : 내·외장 무선식별장치 ※시행일 2021.2.12.
반려견 안전 관리	• 동물 외출 시 <u>목줄(가슴줄)</u> 을 하거나 이동장치 사용 의무	• 목줄(가슴줄) 길이 2미터 이하 제한 • 건물내 공용공간에서는 동물을 안거나 목걸이를 잡도록 의무화 ※시행일 2022.2.11.

☐ 반려견 산책 시 목줄은 2m 이내로

- 반려견과 외출할 때는 목줄(가슴줄)을 착용하거나 이동장에 넣어 이동합니다.
- 반려견 목줄 착용 시, 사람이 잡고 있는 줄의 길이는 2m를 넘지 않도록 합니다.
- 위반사항 적발 시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승강기에는 동물을 안고 탑승합니다.

- 건물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동물을 직접 안고, 동물이 이동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 동물을 안을 수 없는 경우, 목줄의 목덜미 부분이나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습니다.
- 위반사항 적발 시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펫티켓을 준수합니다

- 반려견과 산책할 때는 반드시 목줄(가슴줄)을 착용합니다.
- 반려견의 배설물은 꼭 수거해주세요.
- 반려견 동물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동물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 등) 방문하여 등록·신청(내장형은 동물병원만 가능)
- 입마개 의무착용대상 맹견 5종 : 도사견, 아메리칸 핏볼테리어, 아메리칸스테퍼드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견
- 개소음으로 인한 주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십시오.

【 부서명 : 경제정책과 ☎ 560 - 1903 】